양평 하늘채 센트로힐스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최조 입주자모집공고일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24.05.10.(금)	**25.12.05.(금)**	민영	비규제지역	6개월	없음	미적용

1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동호수 배정은 선착순으로 배정하며, 모집공고안을 숙지하시어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하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05.(금)**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 허가1과 – 00000호(0000.00.00.) 로 승인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10.(금)이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양평군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6개월이다.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 허가1과 - 00000호(2000.00.0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661-7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대 23층 7개동 총 539세대 중 일반분양 33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 및 입주기간은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1	059.8697A	59A	59.8697	22.2377	82.1074	50.4880	132.5954	41.2897	**6**
02	059.8275B	59B	59.8275	22.0732	81.9007	50.4524	132.3531	41.2606	**6**
03	074.9468A	74A	74.9468	27.3836	102.3304	63.2025	165.5329	51.6878	**5**
04	074.9050B	74B	74.9050	28.0618	102.9668	63.1673	166.1341	51.6590	**16**
합 계									**33**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환산 시 소수점 4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 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호구분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2026.01.30	2026.01.30	2026.01.30	2026.01.30	2026.05.29	2026.10.30	입주지정일

															(입주지정기간내)
59A	6	103동 (1~2호)	5~9	2	21,028,000	341,649,000	362,677,000	18,134,000	36,267,700	36,267,700	36,267,700	36,267,700	36,267,700	36,267,700	126,936,800
			10~12	1	21,028,000	347,271,000	368,299,000	18,415,000	36,829,900	36,829,900	36,829,900	36,829,900	36,829,900	36,829,900	128,904,600
		105동 (1~2호)	10~14	1	21,028,000	351,029,000	372,057,000	18,603,000	37,205,700	37,205,700	37,205,700	37,205,700	37,205,700	37,205,700	130,219,800
		105동 (5호)	20-23	1	21,028,000	365,501,000	386,529,000	19,327,000	38,652,900	38,652,900	38,652,900	38,652,900	38,652,900	38,652,900	135,284,600
		106동 (1~2호)	10~14	1	21,028,000	358,545,000	379,573,000	18,979,000	37,957,300	37,957,300	37,957,300	37,957,300	37,957,300	37,957,300	132,850,200
59B	6	104동 (1~2호)	3~4	1	21,013,000	338,689,000	359,702,000	17,986,000	35,970,200	35,970,200	35,970,200	35,970,200	35,970,200	35,970,200	125,894,800
			5~9	1	21,013,000	346,030,000	367,043,000	18,353,000	36,704,300	36,704,300	36,704,300	36,704,300	36,704,300	36,704,300	128,464,200
			10~14	2	21,013,000	351,719,000	372,732,000	18,637,000	37,273,200	37,273,200	37,273,200	37,273,200	37,273,200	37,273,200	130,455,800
			15~18	2	21,013,000	358,876,000	379,889,000	18,995,000	37,988,900	37,988,900	37,988,900	37,988,900	37,988,900	37,988,900	132,960,600
74A	5	101동 (1호)	5~9	1	26,323,000	437,815,000	464,138,000	23,207,0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162,448,200
		102동 (5호)	10~14	2	26,323,000	431,147,000	457,470,000	22,874,000	45,747,000	45,747,000	45,747,000	45,747,000	45,747,000	45,747,000	160,114,000
		103동 (5호)	15~19	1	26,323,000	439,931,000	466,254,000	23,313,000	46,625,400	46,625,400	46,625,400	46,625,400	46,625,400	46,625,400	163,188,600
		107동 (1~2호)	5~9	1	26,323,000	437,815,000	464,138,000	23,207,0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46,413,800	162,448,200
74B	16	101동 (2~3호)	3~4	1	26,308,000	431,376,000	457,684,000	22,885,000	45,768,400	45,768,400	45,768,400	45,768,400	45,768,400	45,768,400	160,188,600
			10~14	1	26,308,000	447,956,000	474,264,000	23,714,000	47,426,400	47,426,400	47,426,400	47,426,400	47,426,400	47,426,400	165,991,600
			15~19	4	26,308,000	457,063,000	483,371,000	24,169,000	48,337,100	48,337,100	48,337,100	48,337,100	48,337,100	48,337,100	169,179,400

		102동 (3~4호)	10~14	3	26,308,000	438,657,000	464,965,000	23,249,000	46,496,500	46,496,500	46,496,500	46,496,500	46,496,500	46,496,500	162,737,000
			20~22	1	26,308,000	456,742,000	483,050,000	24,153,000	48,305,000	48,305,000	48,305,000	48,305,000	48,305,000	48,305,000	169,067,000
		103동 (3~4호)	10~14	1	26,308,000	429,357,000	455,665,000	22,784,000	45,566,500	45,566,500	45,566,500	45,566,500	45,566,500	45,566,500	159,482,000
			15~19	3	26,308,000	438,107,000	464,415,000	23,221,000	46,441,500	46,441,500	46,441,500	46,441,500	46,441,500	46,441,500	162,545,000
			20~22	1	26,308,000	447,081,000	473,389,000	23,670,000	47,338,900	47,338,900	47,338,900	47,338,900	47,338,900	47,338,900	165,685,600
		106동 (3~4호)	10~14	1	26,308,000	443,306,000	469,614,000	23,481,000	46,961,400	46,961,400	46,961,400	46,961,400	46,961,400	46,961,400	164,364,6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금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통 유의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비용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 면적과 지하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 공동 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 지분은 주택형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 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공급 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공급 계약서에 따라 정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람. 또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 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 금액은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음.(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금액은 환불 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3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제출 제출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유형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 대리계약은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신청 불가함.
	O		인감도장	계약자	
	O		위임장	계약자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일정	**25.12.08.(월)~ 분양완료시 (10:00~16:00)**	**양평 하늘채 센트로힐스 분양사무실(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67)**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분양계약 관련 인지세는 분양계약자의 비용 및 책임하에 납부하도록 하며,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함. 또한 전매(상속, 증여 등 포함)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분양계약자 및 분양계약자의 분양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협의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219-910033-28804	무궁화신탁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 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5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귀속됨
- 분양계약 시 분양계약자 책임으로 인지를 구매하고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임.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음.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음.

■ **대출제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6.01.30	잔금(80%)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59A,B	20,900,000	2,090,000	2,090,000	16,720,000
74A,B	25,916,000	2,591,600	2,591,600	20,732,8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금액에는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마감재, 안방 대형 드레스룸, 주방 또는 복도 팬트리룸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발코니등 설치 전원박스 및 조명등이 미설치로 감소되고 추후 조명설치가 불가능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비 확장 발코니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식당))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1) 시스템에어컨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설치대수 (실내기)	에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업체명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4.10.31	잔금(80%)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59A,B	기본형	2	거실+안방	삼성, LG (택1)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전체형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기본형 (공기청정키트 추가)	2	거실+안방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전체형 (공기청정키트 추가)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74A,B	기본형	2	거실+안방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전체형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기본형 (공기청정키트 추가)	2	거실+안방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전체형 (공기청정키트 추가)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주택형	옵션선택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실외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59A,B	기본형	AJ060BN1PBC1	RNW0600C2WP	AJ020BN1PBC1	RNW0200C2WP	-	-	-	-	AJ030MXHNBC1	RPUQ0303S2R
	전체형	AJ060BN1PBC1	RNW0600C2WP	AJ020BN1PBC1	RNW0200C2WP	AJ020BN1PBC1	RNW0200C2WP	AJ020BN1PBC1	RNW0200C2WP	AJ050MXHNBC1	RPUQ0403S2R
74A,B	기본형	AJ072BN1PBC1	RNW0720C2WP	AJ032BN1PBC1	RNW0230C2WP	-	-	-	-	AJ040MXHNBC1	RPUQ0303S2R
	전체형	AJ072BN1PBC1	RNW0720C2WP	AJ032BN1PBC1	RNW0230C2WP	AJ020BN1PBC1	RNW0200C2WP	AJ020BN1PBC1	RNW0200C2WP	AJ050MXHNBC1	RPUQ0504S2R

(2) 청정환기 시스템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업체명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전 주택형	5단계필터시스템, 에어룸콘트롤러(1개소), 에어모니터(이동형)	경동나비엔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3) 전기쿡탑 (택 1)

(단위:원, VAT포함)

선택형	주택형	품목	제조사/모델명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선택1	전 주택형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삼성 NZ63T5601AK	550,000	55,000	55,000	440,000
선택2	전 주택형	인덕션 3구(비스포크)	삼성 NZ63DB657CAWS	1,570,000	157,000	157,000	1,256,000
선택3	전 주택형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LG BEY3GSBI	840,000	84,000	84,000	672,000
선택4	전 주택형	인덕션3구	LG BEI3GQBI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4) 전기오븐 (택 1)

(단위:원, VAT포함)

선택형	주택형	품목	제조사/모델명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4.10.31	잔금(80%)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선택1	전 주택형	일반형	삼성 NQ36A6555CK	350,000	35,000	35,000	280,000
선택2	전 주택형	고급형	삼성 NQ50T8539BK	890,000	89,000	89,000	712,000
선택3	전 주택형	일반형	LG MZ385EBTA	500,000	50,000	50,000	400,000
선택4	전 주택형	고급형	LG MZ941CLCAT	770,000	77,000	77,000	616,000

(4) 식기세척기 (택 1)

(단위:원, VAT포함)

선택형	주택형	품목/마감	제조사/모델명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선택1	전 주택형	12인용/가구도어 마감	삼성 DW60T7065SS	880,000	88,000	88,000	704,000
선택2	전 주택형	14인용(비스포크)/새틴베이지 패널마감	삼성 DW60BB815UAP	1,360,000	136,000	136,000	1,088,000
선택3	전 주택형	12인용/가구도어 마감	LG DIB22S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5) 빌트인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택 1)

(단위:원, VAT포함)

구분	선택형	주택형	품목	제조사/모델명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선택1	59A	오브제 패키지	LG_오브제_스테인리스 패널 BC4S1AA1(S) (냉장고 4도어) + BC3K1AA1(S) (김치냉장고3도어)	6,750,000	675,000	675,000	5,400,000
		59B	오브제 패키지+키큰장		7,150,000	715,000	715,000	5,720,000

		74A, 74B	오브제 패키지+시스템키큰장		7,850,000	785,000	785,000	6,280,000
	선택2	59A	비스포크 패키지	삼성_비스포크_새틴베이지 패널 RR40C7995AP/7895AP (냉장) RZ34C7965AP/7865AP (냉동) RQ34C7945AP/7845AP (김치)	5,550,000	555,000	555,000	4,440,000
		59B	비스포크 패키지+키큰장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74A, 74B	비스포크 패키지+키큰장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선택3	59A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K221PR14BR2/L2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59B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74A, 74B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선택4	59A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 RQ22K5L/R01EC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59B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74A, 74B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6) 현관중문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4.10.31	잔금(80%)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전 주택형	3연동 슬라이딩도어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7) 욕실 업그레이드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내역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4.10.31	잔금(80%)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전 주택형 공용욕실/부부욕실	욕실 스마트 환기휀	힘펠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전 주택형 공용욕실/부부욕실	욕실 고급화	수입타일+세면대,양변기+수전류 일체 고급화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8) 조명업그레이드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59A	거실/안방/ 조명특화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59B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74A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74B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9) 주방 마감

(단위: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 + 주방벽	59A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59B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74A, 74B	3,050,000	305,000	305,000	2,440,000
주방 아일랜드 바 테이블형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선택시 선택가능	59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74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10)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아트월 세라믹타일 + 가구판넬 연장 + 히든도어	59A	8,350,000	835,000	835,000	6,680,000
	59B	14,150,000	1,415,000	1,415,000	11,320,000
	74A	10,500,000	1,050,000	1,050,000	8,400,000
	74B	13,800,000	1,380,000	1,380,000	11,040,000

(11) 칸칸_하이브리드 월

(단위: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칸칸_하이브리드 월 (침실1,2 사이 벽체 변경)	59A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59B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74A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74B	1,750,000	175,000	175,000	1,400,000

(12) 붙박이장

(단위: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전까지
안방 붙박이장	59A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59B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74A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74B				
침실1 붙박이장	59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59B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74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74B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조합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브랜드별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임.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타입별 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며 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 할 수 없으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위치 확인 요망)
  - 시공시 설치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과 상이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운영상 사유로 냉난방 공용 제품을 설치하였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간 조건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천장 단열재가 반영되어 실내기의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음.(관련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및 전용 콘센트 설비(2개소), 거실용 냉매박스를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 거실용 냉매박스를 설치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쿡탑(인덕션, 하이브리드쿡탑)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으며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전기쿡탑 선택시 상판 타공 치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전기쿡탑 제조사 및 제품 선택에 따라 디자인(색상)이 다르오니 옵션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비스포크패키지, 오브제패키지 선택시 제조사에 따라 표면마감이 상이하오니 모델하우스에서 참조하시기 바람.
- 빌트인 냉장고 패널색상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동일한 색상으로 설치되며 패널변경은 안됨. (변경은 추후 계약자가 개인적으로 변경시 비용발생 할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시 설치되는 키큰장의 내부 형태 및 구성은 타입에 따라 상이하며,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김치냉장고/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측면 톨장의 형태, 사양, 손잡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됨.
- 59A 타입은 키큰장과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됨.
- 59A 타입은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및 김치냉장고 선택시 키큰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추가선택품목 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시 식기세척기, 전기오븐과 동일한 크기의 수납가구가 제공됨.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시 바닥, 벽에는 별도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 높이는 브랜드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 한 경우 품목에 따라 가구도어 패널 마감과 새틴베이지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음.

- 식기세척기 LG전자 제품을 선택 한 경우 가구도어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중 청정환기시스템 관련 유의 사항
- 기본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법적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바이패스&프리히터, 헤파필터가 반영되어 있음.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제품, 브랜드, 규격이 변경 설치될 수 있음(임의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없음).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공급금액은 기본 전열교환기 장비, 바이패스&프리히터, 헤파필터 금액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청정환기시시템 유상 옵션 선택 전 제품사양 및 특징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 바람.
- 청정환기시시템 유상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컨트롤러는 거실 혹은 주방 벽에 설치되며 설치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중 욕실 스마트 환기팬 관련 유의 사항
- 욕실 스마트환기팬 옵션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욕실팬은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스마트환기팬 옵션은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에 2개소에 설치되며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중 현관중문 관련 유의 사항
- 현관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됨.
- 압력을 가하여 여닫기를 할 경우 도어댐퍼기능으로 인하여 중문 프레임과 도어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음.
- 본공사 시 비산방지필름이 유리에 부착됨.
- 본 시공시 제품의 상하부 레일, 손잡이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중 칸칸 공통 유의사항
- 칸칸 선반의 최대 하중은 15kg(선반 하나당)이며 한쪽 면에만 과도한 무게를 적용하는 것은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의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선반, 서랍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위험사고가 발생하오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제품사이에 콘센트 등 전기관련 아이템은 적용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중 칸칸 침실1,2 통합 하이브리드 월 관련 유의사항
- 칸칸 하이브리드 월 선택시 침실치수, 조명, 배선기구, 천장형에어컨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됨.
- 칸칸 하이브리드 월은 바닥과 천장에 압력으로 고정하는 기둥형 타입이며, 바닥과 천장에 피스 등으로 인한 고정은 하지 않음.
- 기둥포스트 패키지, 선반, 서랍은 이동식으로 제공됨.
- 본 시공시 제품의 기둥, 서랍, 선반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반, 서랍 등을 조작, 설치 할 경우 벽체 피어싱에 정확하게 결합하여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소비자가 직접 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법을 숙지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강한 충격을 가할 시에는 흔들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중 붙박이장 관련 유의 사항
- 붙박이장 설치로 인하여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천장, 벽, 바닥)가 시공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중 마감 업그레이드 관련 유의사항
- 아트월 세라믹 타일 설치 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아트월 타일은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아트월 세라믹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히든도어 적용은 안방/침실1/침실2/공용욕실만 적용함.(안방욕실 미 적용)
- 복도판넬 패턴디자인은 타입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엔지니어드스톤 및 아일랜드 바테이블형 식탁 관련 유의 사항

- 엔지니어드 스톤은 주방상판(MMA)와 벽체(타일)을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옵션이며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엔지니어드 스톤 및 아일랜드 바테이블형 식탁 옵션은 자재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이랜드 바테이블형 식탁은 기본제공 되는 주방 아일랜드 상판을 식탁형으로 연장하는 옵션이며 엔지니어드스톤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시공됨.
- 아일랜드 바테이블형 식탁은 고정형으로 제공되어 임의로 옮길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중 조명 업그레이드 관련 유의사항
-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조명기구는 전용의 컨트롤러(월패드,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되며,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조명기구의 경우 연동이 안될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소비자가 직접 조명 교체 시 등보강등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조명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조명 수량이 변경되고 디밍 및 색온도 조절이 단계별 가능하며, 주방 간접조명은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없으며 단순 on/off 기능만 있고, 안방 조명은 디밍 및 색온도 조절이 단계별 가능함.
- 입주후 조명 및 스위치를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할 경우 디밍 및 색온도 조절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람.
- 해당 옵션 선택시 타입에 따라 주방 또는 식당의 우물천정이 형성되며, 우물천정 크기는 타입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욕실 업그레이드 관련 유의사항
- 수입 타일 설치 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타일은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수입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	국민은행	439201-01-406372	무궁화신탁	
추가선택품목	국민은행	439201-01-406372	무궁화신탁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26.01.30)**	**잔금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납부비율	10%	10%	80%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 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501호 홍길동 : 1-05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7년 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아파트 731대, 근린생활시설 4대, 총 735대(장애인주차 28대 포함), 자전거보관소(165대), 경비실, 관리사무실, 경로당,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센터, 키즈도서관&작은도서관, 주민카페,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등) 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외

※ 주차대수, 확장형 주차비율, 장애인주차 위치, 하역공간 등은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000000-000-00000000호	9,300,578,400 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

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6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유의사항**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2009년 4월 1일「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계약하기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대지지분 감소는 정산하지 않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외부 여건

1) 일반공통

• 당 사업은 2023년 06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ttps://www.hanulche-yp.kr)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107동 하부 경로당, 101동과 102동 사이에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타가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101동 및 107동 하부에 커뮤니티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기계/전기 관련 설비(지붕 실외기 등)가 공용공간에 설치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엘리베이터/계단실이 주동과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조명・태양광 발전설비・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VR, 홍보영상,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 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산지) 및 도로, 건물현황 등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 시야간섭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외벽 색채 및 디자인은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디자인, 마감사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 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주 등의 색채, 디자인 마감사양)

  등은 인허가청의 협의와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개선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이후 아파트의 외관, 옥탑부, 주동형태,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형태, 문주형태, 창호형태 및 크기, 측벽 디자인, 태양광 발전패널, 외부색채, 외부디자인 및 마감사양, 난간색상 및 재질, 외부 로고사인의 형태/위치/내용, 기타 시설물 위치, 식재 및 포장계획, 옹벽 등은 인허가협의,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석재뿜칠로 마감되며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는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의 돌출장식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동일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의 동출입구, 필로티 및 기타 시설물의 규모, 디자인, 마감재 등은 동별 여건에 따라 상이함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외관디자인, 마감사양, 색채 등),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주차출입구,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경관조명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 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단지 내 시설물과 외부공간의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경관조명,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수목관리, 전기차충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종 환기구(D.A 등)의 면적 및 위치가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추가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는 59A, 74B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붕 및 옥탑에 위성안테나, TV 공청 안테나, 이동 통신 중계기, 피뢰침, 저수조,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항공 장애등, 인명 구조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는 102동, 105동, 107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102동, 105동, 107동 통신실에 설치될 예저이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와 제휴가된 LG U+의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면 입주자가 사용한 충전요금은 각 개인별로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오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제휴 내용 변경 및 제휴 종료 등에 따라 구축 및 운영 주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LG U+에서 전기차충전설비의 전기사용량 계량을 위해서 LG U+ 명의로 한전 계량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03동 옥상층에는 아파트 TV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위치 및 규격/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각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 및 인버터 장비가 설치되며 전기생산 시 인버터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며, 위치 및 규모 (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동 혹은 전체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PV, BIPV)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설치 각도에 따라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환경으로 전기생산량이 설계도서와 같이 생산되지 않을 수 있음. 이 점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함.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 (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경관조명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되는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101동 하부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면 수배전반 및 발전기 유지보수 시 진동, 소음 또는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 바랍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 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 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인승 기준은 각동별 설치 세대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승강기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고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승강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안전관리시스템으로 CCTV가 옥외, 각 동 및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가 되고, CCTV 촬영 시 기둥 등으로 일부 촬영 부위가 가려질 수 있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요 방범 및 방재 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욕실스피커폰, 스마트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옥상층에는 아파트 TV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위치 및 규격/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람
- 일부 동 및 세대의 경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경사도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호실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단지 외관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담장은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소방용 공기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장 구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평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세대 내부

- 견본주택에 설치된 CG,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수 있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침실 붙박이장, 선반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59A, 74B) 외 견본주택 미건립(59B, 74A,)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인 59B,75A는 건립타입 59A, 74B와 마감색상 및 디자인이 유사함 단, 단위세대 마루색상, 건립형과 미건립형 공간의 크기 및 형태, 가구 레이아웃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함
- 선택형 타입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손잡이 높이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프레임 및 유리)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잠금장치사양,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 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및 욕실의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배수구의 위치, 설치 유무, 설치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부욕실 바닥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샤워부스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파우더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선반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파우더장,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커튼박스의 길이는 천정배관 등 본 시공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타일, 인조석, 천연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렵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천연석재, 천연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단위세대에 시공된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됨(최하층 세대 설치 제외)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미설치되었고 하향식 피난 사다리로 대체되며, 화재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로 인하여 빨래 건조대 설치 등 공간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피난 대피를 위한 해당 점검구의 위치는 층별로 달라 세대에 따라 바닥닥차,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가 다를 수 있음.(층별 교차 시공)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 일부 발코니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각종 환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욕실 일부분만 바닥난방이 설치되며, 욕조 하부 및 샤워부스 내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평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며, 수납공간이 줄어듬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은 실외기실, 발코니1, 다용도실 높은 단차부위(세탁기 설치부위), 욕조하부, 주방가구, 신발장, 샤워부스 및 도기하부는 제외되며,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계약자가 사용 중 또는 구매 희망하는 가구(식탁, 침대 등) 및 가전기기는 사이즈, 형태 등에 따라 배치 불가 또는 복도면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다용도실(발코니2) 천정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 다용도실(발코니2) 가스계량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이 있을수 있음
- 다용도실(발코니2)이 협소하여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이동이 필요하니 사전 확인 바람
- 다용도실(발코니2)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천장고로 인하여 높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사전에 높이 확인 후 설치 필요함
- 소방법에 의해 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완강기는 관할 소방서 협의에 따라 미적용 할 수 있으며, 설치시에 세부적인 적용 위치는 변경 가능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후드 상부의 침니의 케이싱 사이즈는 성능 만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배수구나 우수, 배수 입상의 위치 등은 사용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수구 미사용시 (배수구에 악취 방지를 위한 봉수 파괴시) 배수관 내부의 악취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에 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유지해야함
- 다용도실(발코니2)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높은 단차부위는 제외) 플라스틱도어 또는 동등사양의 도어로 시공예정임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욕실, 발코니 등은 상이 함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따라 단지 내외부 인접건물에 따라 채광일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주동코아 벽면에 근접하여 인접벽면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계약 전 확인바람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가스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상부세대 오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에서 상부세대의 배관을 점검 및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 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보일러 연도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고, 보일러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위치 및 높이는 성능 향상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시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등이 확장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환기시켜야 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필터 교환이 필요하며, 필터 교체 시 필터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어컨설치를 위한 벽체매립 냉매배관 박스가 거실과 안방 벽면에 설치되며, 거실 아트월 벽면에 설치될 수도 있음.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임
- 건물 외벽에는 각종 설비(환기, 냉난방, 가스 등)를 위한 배관, 덕트, 환기캡, 보일러 연도 등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에 전용 인터넷 회선 공급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 미설치 시, 홈IoT/홈네트워크 외부 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불가),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및 월 사용료는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 이후부터 입주자의 부담임(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 IoK(앱)의 제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업체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IoK(앱)은 제휴 서비스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해당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만 해주는 것이며, 서비스 이용, 이용 시 비용 지급, 이용 시 불편·불만·A/S 등 본 서비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와 무관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Iok(앱)의 제휴 서비스는 해당 업체의 사정 등으로 향후 Iok(앱)에서 본 서비스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세대에서 스마트 하늘채 IoK(APP) 서비스(홈IoT)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24개월간 무상 제공이며, 24개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되어 입주자 부담임.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임(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음
- 가전제어 서비스의 경우 연동 가능한 제조사 및 가전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 도어락은 사용자 핸드폰 연동 디지털 도어락 제품이며, 일부 스마트 폰과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함
- 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 1층,2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방범을 위하여 거실 및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하며, 나머지 기타 층에는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음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욕실스피커폰, 스위치, 디지털도어락, 도어카메라, 소방설비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으로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승강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 세대 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 설치된 벽에 전기/통신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됨.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수량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및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세대 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기본제공 되는 전기박스 위치가 타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박스가 아트월 중심에 없을 수도 있으니 전기박스를 이용하여 벽걸이TV 설치를 금지함.
- 조명 유상옵션 선택시 디밍 및 색온도 제어 가능 조명기구는 전용의 컨트롤러(월패드,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되며,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조명기구의 경우 연동이 안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명 유상옵션 선택시 추후 소비자가 직접 조명 교체시 등보강등 추가 공사가 필요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음 (원패스카드 1개만 지급)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의 타입 및 위치,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커튼박스에 별도의 전원이 설치되지 않음.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 간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사이버모델하우스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 및 본 공사 단위세대 조명의 색온도가 5700K 적용되며, 사이버 및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음.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원선이 가구장내에서 노출될 수 있음
- 가구에 포함되어 시공되는 전기배선기구의 경우 가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함.
- 월패드에서 날씨정보가 표시되며, 홈넷 서버에 인터넷이 않될 경우는 월패드에서 날씨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함.
- 세대 내 배선기구 (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수량 다를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외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시에는 추가되는 실외기의 전원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명 유상옵션 선택시 추후 소비자가 직접 조명 교체시 등보강등 추가 공사가 필요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벽체는 콘크리트 구조의 내력 벽체 이외에 조적 및 건식벽 등 비내력 벽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식 벽체 벽면에는 고정형 철물 등을 이용해 중량의 물건을 설치할 수 없음.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으며, 내부에 고정형 방충망이 설치됨.

3) 공용부/단지 내 환경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 및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차장 주출입구 107동 옆 가스정압기 설치예정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동 공용홀에 근린생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국기게양대는 설치되지 않고 각 동 출입구에 1개소 씩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외부공간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보행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상부공간 등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색채, 디자인, 마감재,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상),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은 그 가동에 따른 소음, 물방울 비산, 수생생물로 인한 소음이나 오염, 수경시설에 설치된 조명기기 등 각종 제반시설 가동 및 운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일부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관리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비용 등 각종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수경시설 및 각종 조경시설물의 경우 안내사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외 사용,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 시설의 임의적 개조 등 입주민의 사용상 개인부주의 및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 단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과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주민의 편의 및 자의에 의하여 단지내외 식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변경하였을 시,

이는 민원요소가 되지 않음.
• 배치 상 일부 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천창,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휀룸, 실외기, 환기구(D.A), 천창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 주변 및 필로티 내부에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필로티 내부 면적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일반 거치대형, 2단 거치대형, 레일 거치대형, 경사 거치대형 등으로 설치될 수 있음.
- 필로티 및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 내에 자전거보관소 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필로티 위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 바람

1. 다양한 평면 타입이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개발,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법면 또는 사면,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환기구(D.A),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보행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보행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문주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받을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해당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
- 문주, 주차출입구 등 외부시설물, 아파트 외관, 저층부 석재패턴, 주동출입구, 옥탑 및 지붕구조물, 부대복리시설 등의 색채 및 디자인, 마감사양 등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의 경우 인접세대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문주 등 외부시설물, 옥탑 및 지붕구조물 및 디자인을 위한 각종 조형물 등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PC조 포함), 철골조 등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골조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레벨차이에 의해 생기는 건축옹벽은 석재뿜칠 등의 마감으로 진행 예정이며 분양모형과는 다를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 현황 상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외곽 일부에 옹벽 또는 돌쌓기 등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 상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람(현장여건에 의해 추가 설치 및 삭제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인접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 옹벽 상부는 안전,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식재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외부경관상 옹벽면의 노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 옹벽 상단의 일부공간은 입주민의 이용과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옹벽 상단 조성되는 계단 및 외부 산책로는 그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입주민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지상층의 각 동마다 주동출입구 및 엘리베이터홀의 형태 및 여건은 상이할 수 있으며, 높이는 1개층으로 구성됨
- 주변 도로 및 인접대지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의 계단실 창호는 소방관련 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부창만 개폐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레벨계획에 따라 단지내 도로 및 보행통로에 경사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천시 또는 겨울철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의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저층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문주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상업시설 주방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와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 하부 및 인근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지하4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 배분,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 동별 지하 엘리베이터 홀과의 거리 및 동선 연결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 기둥구조물에 의해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임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계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휀룸 및 주차장 배기휀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최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여닫음에 어려움과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추가시설(방풍구획, 도어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통행의 불편, 계약면적에 증감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패널 및 일조량, 계절 및 그늘 여부에 따라 전기생산량이 일별 월별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태양광 패널에 낙엽 또는 먼지 등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전기생산량이 아주 적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요 방범 및 방제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경우 공용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경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공조시스템 적용되어 가동될 경우 공용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 경관조명은 인허가 과정 및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설치 및 위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함.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는 102동, 105동, 107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102동, 105동, 107동 통신실에 설치될 예저이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와 제휴가된 LG U+의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면 입주자가 사용한 충전요금은 각 개인별로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오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바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제휴 내용 변경 및 제휴 종료 등에 따라 구축 및 운영 주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LG U+에서 전기차충전설비의 전기사용량 계량을 위해서 LG U+ 명의로 한전 계량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바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관제 시스템은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관제 설비의 유지관리 비용은 근린생활시설의 입대위와 협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주차관제설비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무인택배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무인택배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동별 1개소로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이동 동선이 먼 곳이 발생하여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택배차량으로 인해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동별 1개소 설치되며 택배 칸수는 등기칸을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의 칸수로 설치되며, 기타 부가서비스를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여닫음에 어려움과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아님.

• 단지 경계면 일부에는 외부와의 경계를 위한 투시형 울타리(높이 약 1.2미터내외)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구간, 규격,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 및 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클럽, 주민카페(커뮤니티공간)등),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이며, 기타시설로 외부휴게공간,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장, 무인택배보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설치되나, 단지 여건상 주변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울타리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 예정이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운동시설은 고정형 가구(주방가구,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기구, 인테리어 비품 등)와 비품은 제외되고,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붙박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달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및 변경도서와 상이할 경우 카탈로그를 우선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요구조부(보, 기둥, 슬래브)는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조립틀을 시공하는 구조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재료의 강도, 철근배근, 부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평면 계획 및 창호 및 유리 등의 위치 및 사양 등은 입주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차로는 6미터 이상(일부구간 제외), 차량 통과 유효 높이는 2.3미터(지하3,4층은 2.7미터)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 높이는 2.1미터임
• 지하4층은 비주거(근린생활시설 4대) 주차영역에 해당되어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진입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됨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변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필로티 천정과 출입구 주변의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5)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지하4층에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주차출입 통행도로 일부를 공유함.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상업시설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및 주방환기를 위한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인해 인근동에 악취발생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는 현황측량결과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감소) 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음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 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입점 후 변경시도 동일)
- 상가별 전원공급, 소방 등 전기, 통신, 소방 시스템 설비가 건축 구조상 각 점포 상부 천장을 관통하여 설치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시 다른 매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상가 전기사용량 검침은 별도의 원격검침 시스템이 없으며, 공용판넬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조명기구는 LED 조명으로 시공되며, 등기구 교체 공사를 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전화,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시공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한 신청은 수분양자가 직접 기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야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주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상가 점포별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은 3상 5kW / MAIN 차단기 4P 50AF/40AT /단상 분기 차단기 MCCB OR ELB 포함 6회로 / 케이블 규격은 F-CV 10sq/4C 가 제공됩니다.
- 상가 간판용 전원은 상가 간판 설치 부위에 전원선(단상)이 1개소 인출되며, 인출 위치를 변경 요청할 수 없음. 상가 간판용 전원을 미사용 시 인출되어 있는 전원선을 해체 혹은 마감처리를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전용의 주차관제시스템은 없으며, 공동주택 주차관제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차관제 설비의 유지관리 비용은 공동주택 입대위와 협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주차관제설비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6) 단지 외부 여건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본 사업지는 철도 및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변전소, 고압케이블 등),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모형 및 이미지 등 분양자료에 표현된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 가로녹지, 공원시설은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이며, 그 계획과 디자인, 가로수, 공원식재, 시설물 구성,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근린공원에서 단지내로 접근하기 위한 동선이 조성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 가로녹지, 공원시설은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관련 민원을 시공사로 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철도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마감사양,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와 시공시 현장상황, 디자인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및 TV수구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붕 및 옥탑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공시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필로티 내부 또는 주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필로티 내부에 우선 배치하며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하고, 그 디자인 및 배치, 수량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차의 진입, 회전, 정차 등을 위한 협의에 따라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조경 및 기타 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층고, 근린생활시설 층고,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람

• 옥외 계단 형태 및 위치, 단지 옹벽 등의 공법(보강토 옹벽 등), 건축물 PIT의 마감. 형태 및 규모, 계단실 옥탑의 형태, 1층 로비홀 천장 및 필로티 천장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벌칙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람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적용)

의무사항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함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효율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 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세대 내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함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41조의2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 : 우량등급 적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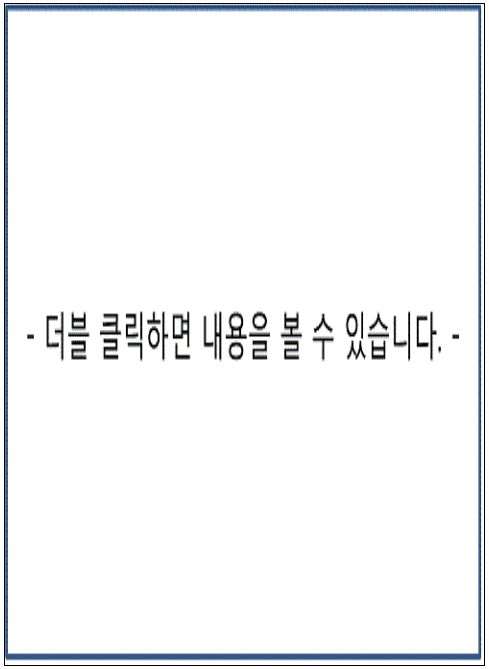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더블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경진건축사사무소	㈜한국엔지니어링	㈜영설계엔지니어링	㈜지화기술단
감리금액	2,922,552,600원	601,180,000원	673,070,000원	286,000,000원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등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양평덕평지구지역주택조합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글로벌(주)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67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사업자등록번호	502-82-87682	120-81-50012	120-81-50012

7 현장 및 견본주택 안내

견본주택	현장주소	문의전화	홈페이지
○ 관람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67 ○ 관람시간 : 오전 10:00~ 오후 17:00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661-7	031-770-4900	https://www.hanulche-yp.kr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계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 드림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